

■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[별표 1] <개정 2022. 1. 4.>

별정우체국의 시설 및
비품기준 (제11조관련)

1. 시설기준

구 분	실 명	면 적(m ²)	비 고
창 구 부 문	공중실	50	조도(밝기) 500LUX 이상
	방풍실	8	
	현업실	50	
	창구용벽금고	15	
	문서고	10	
	상담실	12	금융상담 및 고객접대
	기타실	15	모뎀실, UPS실, C·S실
	소 계	160	
공 용 부 문	화장실	25	남·여 구분
	기계실	15	
	소 계	40	
	총 계	200	최소면적

2. 비품기준

품 명	단 위	수 량
가. 책상(3종)	각	1
나. 책상(4종)	각	3
다. 의자(3종)	각	1
라. 의자(4종)	각	3
마. 금고(5호)	대	1
바. 수제금고	대	1
사. 캐비닛	개	1
아. 계산기	대	1
자. 패종시계	대	1
차. 필기대	개	1
카. 공중용장의자	각	1
타. 게시용사진틀	각	1
파. 침 구	조	1
하. 소화기	개	1
거. 방화수통	개	1
너. 기타 우정사업본부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		

비 고

1. 벽금고를 설치한 때에는 마목의 금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.
2. 체신청장은 업무취급의 필요에 따라 비품의 규격을 지정할 수 있다.